

#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4,401,189	7,932,036
일반회계	200,376,296	6,011,289
일반회계	200,376,296	6,011,289
기타특별회계	61,578,074	1,847,34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29,774	54,89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5,371	15,161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84,465	26,534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3,564,746	706,94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300,200	279,00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259,800	337,794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098,000	62,94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1,510,027	345,301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510,160	15,305
기반시설특별회계	115,531	3,466
공기업특별회계	2,446,819	73,405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2,446,819	73,40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09,65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